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27
----------	------------

제안년월일 : 2018년 4월 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한강공원내 금지행위에 관한 조문 수정과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2. 주요 골자

- 전기자전거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0호)
-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22조제5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를 “차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행위는”을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으로 한다.

안 제22조제3항 중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안 별표 3 제10호의 금지행위란 중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를 “차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한 차
 례만 연임-----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65세 이상노인·다둥이”을 “65세 이상 노인·다둥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를 “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에 기여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이유없이 주정”을 “주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정된 장소외에서”를 “이륜 이상의”로, “영업행위”를 “영업행위.”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행위는”을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제22조제3항 전단 중 “자 1인”을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8호에 서울함공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함 공원	어린이(6~12세)	700~2,000원
	청소년(13~18세)	1,500~3,000원
	성 인(19세 이상)	2,000~4,000원
	단 체(20인 이상)	
	- 어린이(6~12세)	500~1,500원
	- 청소년(13~18세)	1,000~2,000원
- 성 인(19세 이상)	1,500~3,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본원칙)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u>수립, 시행하여야</u> 한다.</p> <p>제14조(이용료)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의사상자·장애인·<u>65세 이상노인·다둥이</u> 행복카드 소지자·토요일교외체험학습 참여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p> <p>3. ~ 4. (생략)</p> <p>5.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u>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u>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p> <p>③ ~ ⑥ (생략)</p> <p>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p>	<p>제4조(기본원칙)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수립·시행하여야</u> --.</p> <p>제14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65세 이상 노인·다둥이</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u>재능을 기부하거나 체육시설 관리</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금지행위) ① ----- -----</p>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 8. (생략)

9.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단서 신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 13. (생략)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
----- 주정-----

3. ~ 8. (현행과 같음)

9. 이론 이상의 -----
---- 영업행위.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

-- . -----

-----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

11. ~ 13. (현행과 같음)

14. -----
----- 아니하는 행위

15. 제18조에 따른 유어행위 금지 위반

② (생략)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위원을 선임한다.

④ (생략)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략)

⑤ 회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 회의에 필요한 사전 자료 수집·회의안건 검토, 자문 등 별도의 작업이나 용역을 제공한 자에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 1명-----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 차례만 연임-----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생략)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 1. ~ 7. (생략)
- 8. 기타

구분	기준및이용료	
영화촬영	(생략)	(생략)
녹화	(생략)	(생략)
거북선관람	(생략)	(생략)
잔디발행사	(생략)	(생략)
도로점용행사	(생략)	(생략)
입장권발매행사	(생략)	(생략)

----- 범위-----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 1. ~ 7. (생략)
- 8. 기타

구분	기준및이용료	
영화촬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녹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거북선관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잔디발행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로점용행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입장권발매행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합 공원	<u>어린이(6~12세)</u>	<u>700~2,000원</u>
	<u>청소년(13~18세)</u>	<u>1,500~3,000원</u>
	<u>성인(19세이상)</u>	<u>2,000~4,000원</u>
	<u>단체(20인이상)</u>	
	- 어린이(6~12세)	500~1,500원
	- 청소년(13~18세)	1,000~2,000원
	- 성인(19세이상)	1,500~3,000원